

처음ISA RP자동매매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이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처음ISA RP자동매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당 서비스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에 한하여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으로 한정하여 제공될 수 있다.
- ③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P"란 보유기간에 따라 약정 수익률의 이자를 제공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회사가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매도하는 채권을 말한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계좌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성립 및 해지)

- ① 서비스의 성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의하여 온라인거래서비스가 약정된 고객은 회사의 온라인시스템(MTS)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에 서비스를 해지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 해지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의하여 온라인거래서비스가 약정된 고객은 회사의 온라인시스템(MTS)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처음ISA RP자동매매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의 위탁예수금 잔액으로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에 고객의 별도 요청 없이 별지에서 정한 RP로 자동 매수하며, 고객이 계좌에 예탁된 매수 가능한 예탁금을 초과하여 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해당 매수 주문일에 별지에서 정한 RP를 자동 매도하는 서비스
2. 고객이 계좌에 예탁된 증권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제5조 1항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RP를 자동 매수하는 서비스
3. 주식매매 결제일에 결제금액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요청 없이 별지에서 정한 RP의 매도를 통해 결제부족금액, 그 밖의 미납금 등을 자동 변제하는 서비스

제5조(입금액에 대한 자동 RP매수 처리 절차)

① 입금액에 대한 자동 RP매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1.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시간 내에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 현재 회사가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채권/RP > RP/외화RP안내)에 고시한 수익률로 별지에서 정한 RP를 자동 매수 처리한다. 단, 매수 처리는 입금액이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별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2.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시간 외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액 전액을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다음 영업일에 제1호와 같이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도, 제재, 금지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채권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 전액을 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회사는 이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후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4. 제3호와 같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도, 제재, 금지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가 채권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5. 회사는 RP자동매수 시 별지에서 정한 개인별 최고매수한도 내에서 매수한다. 이 경우 매수한도를 초과하는 예탁금 잔액에 대하여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제6조(자동 매수된 RP에 대한 매도)

고객은 언제든지 자동 매수된 RP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면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출금신청서, 그 밖의 제 신고서류의 인감(서명)을 고객이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출금에 응하거나 그 밖의 고객의 권리행사의 청구에 응하였음에도 인감(서명)의 분실·위조·변조·도용·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3.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고객이 연계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연계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연계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를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계법규 등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 동 약관은 2025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1조 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신한ISA > 처음ISA 소개)에 고시
2. 제4조 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신한ISA > 처음ISA 소개)에 고시
3. 제 4조 1항, 2항, 3항, 제 5조 1항 1호의 별지에서 정한 RP는 당사의 처음ISA RP를 말한다.
4. 제5조 1항 1호와 2호의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신한ISA > 처음ISA 소개)에 고시
5. 제5조 1항 1호의 별지에서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신한ISA > 처음ISA 소개)에 고시
6. 제5조 1항 1호, 2호, 3호, 5호의 별지에서 정한 예탁금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 > 예탁금 이용료)에 고시
7. 제5조 1항 5호의 별지에서 정한 개인별 최고매수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자산관리물 > 신한ISA > 처음ISA 소개)에 고시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